



보도시점 2024. 11. 28.(목) 회의 종료 시(별도 공지) 배포 2024. 11. 26.(화) 09:00

농지에 전용없이 전후방 산업·생활편의 시설 설치 허용, 전용일시사용이 제한된 산지 3,580ha(여의도 면적 12.3배) 푼다!

- 농식품부·산림청, 국민이 체감하는 농지·산지 규제개선 과제 총 45개 확정
- 이번 농지·산지 규제완화로 향후 10년간 총 2조 5천억 원의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기대

농림축산식품부(장관 송미령, 이하 ‘농식품부’)와 산림청(청장 임상섭)은 11월 28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‘국민이 체감하는 농지·산지 규제개선 과제’ 총 45건(농지 26, 산지 19)을 확정·발표하였습니다.

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2월 제13차 민생토론회('24.2.21) 후속조치로 추진한 ‘토지이용규제 전면 재검토’ 결과를 공유하고, 그 일환으로 농지·산지 규제개선 과제를 추가하였습니다.

농식품부와 산림청은 농지·산지 분야 토지규제 전수를 면밀히 검토하여, 개선과제를 발굴하였으며, 주요 과제 개선 시 민간 투자 확대·부담 경감 등 향후 10년간 총 2조 5천억 원의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됩니다.

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① 주로 농사에만 이용하던 농지를 신기술·전후방 산업까지 이용범위 확대

ICT 확산, 융복합 등 농업여건 변화를 감안하여, △농업진흥지역 내 농업투입재·서비스 등 전후방산업* 시설 설치 허용, △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 농지전용 없이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 설치 허용('25.1월, 「농지법시행령」 개정 중), △농촌공간계획상 특화지구**(7종) 내 농지·산지 규제를 대폭 완화***함으로써 농업을 농산업으로 확대 발전시키는 토대를 마련합니다.

* 예시) 농약·비료 등 제조시설, 축산식품 제조업, 노인복지시설 등

** 농촌마을보호, 농촌산업, 축산, 농촌융복합산업, 재생에너지, 경관농업, 농업유산 지구

*** 지구별 적합시설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 권한 지자체 위임 확대 등

② 생활인구 유입 확대 및 투자 활성화를 통한 농촌·산촌 활력 제고

농·산촌 활력 제고를 위해 △ 산지전용·일시사용 제한지역* (1989년 최초 도입) 중 도로·토지개발 등 여건 변화로 당초 지정목적 상실한 산지 3,580ha (여의도 면적의 12.3배)를 해제합니다.

△관광단지와 달리 100ha로 규모가 제한되어 있는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면적 상한을 폐지하여 농촌 공간을 중심으로 한 관광거점을 구축할 수 있게 하고, △주말농장용 소규모 농지 취득을 위해 작성해야하는 주말체험영농 계획서 항목을 간소화하여 도시민의 농지 매입 및 농촌 유입을 촉진합니다.

* 명승지, 유적지 등의 자연 경관보전을 위하여 제도 도입(舊「산림법 시행규칙」 제90조)

③ 영농 편의제고 및 생활불편 해소를 통한 농업인·농촌주민 삶의 질 개선

농업인·농촌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△농작업 활동 중 필수 편의시설인 화장실·주차장 설치를 허용하고, 영농 편의성 제고를 위해 △고령 농업인 등이 농약·비료 등을 손쉽게 구할 수 있도록 농업진흥구역 농지에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를 허용('25.1월, 「농지법시행령」 개정 중)합니다.

또한, 임업경영 편의성 제고를 위해 △울타리, 관정과 같은 소규모 시설 설치 시 허가·신고 의무*를 면제합니다.

* 산지를 일정기간 동안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허가·신고(「산지관리법」 제15조의2)

송미령 장관은 “이번에 발표한 규제개선 과제는 농촌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,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국민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효과를 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”면서, “기후변화, 인구 감소·고령화 등 농업·농촌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지제도 개편을 포함한 농업·농촌 구조개혁 방안도 연내 곧 발표할 계획”이라고 강조했다.

붙임 국민이 체감하는 농지·산지 규제개선 방안(인포그래픽) 1부

담당 부서	농식품부 정책기획관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	책임자	과 장	문지인 (044-201-1361)
		담당자	사무관	박순홍 (044-201-1362)
	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실	책임자	과 장	주요원 (042-481-4001)
		담당자	서기관	이원기 (042-481-4281)



국민이 체감하는 농지·산지 규제 개선

✓ **기본방향** 농지 활용도 제고, 농·산지 재정비(지정 목적 상실), 국민·기업 불편 해소

- 1 주로 농사에만 이용하던 농지를 **신기술·전후방 산업까지 이용 확대**
- 2 생활인구 유입확대·투자 활성화를 통한 **농촌 활력 제고**
- 3 영농 편의제고 및 생활불편 해소를 통한 **농업인·주민의 삶의 질 개선**

주로 농사에만 이용하던 농지를 신기술·전후방 산업까지 이용 확대

개선과제

- 특정 지역 내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 허용
스마트농업 육성지구내 농지 전용 없이 설치 허용
-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 투입재·서비스 등 전후방산업 시설 허용
농업 전후방 시설현황 조사, 의견수렴 후 농지법령 개정 검토
- 농촌공간계획 상 특화지구(7종) 내 농·산지 규제 대폭 완화
지구별 적합시설 설치를 위한 지자체 농지전용 권한 위임 확대

기대효과

- 첨단농업 확산으로
농업 생산성 제고, 일자리 창출
- 농산업까지 농업 외연 확장
- 경제·사회 서비스 확충,
지역경제 활성화

생활인구 유입 확대 및 투자 활성화를 통한 농촌 활력 제고

개선과제

- 지정목적 상실 사유산지 등 전용·일시사용 제한지역 해제
토지개발, 법령 개정 등 여건변화로 당초 지정목적 상실한
제한지역 사유산지 등 3,580ha(여의도 12.3배) 해제
-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규모 상한(100ha) 폐지
농업·농촌 자원 활용, 민간투자 성공사례 확산
-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지취득 절차 간소화
주말체험영농계획서 상 농기계 확보·자금조달방안 작성 제외

기대효과

- 산업·관광단지 조성 등
민간투자 활성화
- 농촌 공간·자원 활용
대규모 관광거점 마련
- 생활인구 농촌 유입 활성화

영농 편의 제고 및 생활불편 해소를 통한 농업인·주민 삶의 질 개선

개선과제

- 주차장·화장실 등 농작업 필수 편의시설 설치 허용
농작업에 부대되는
필수 편의시설은 농지 설치 허용
- 농업진흥지역 내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 허용
농업인 고령화 등 농업환경 변화에 따라
농약·비료·기자재 등 구매 용이성 제고
- 산지 내 필수시설 설치 시 허가·신고 면제
물다리, 관정 등 소규모 시설은 허가·신고 없이 설치 허용

기대효과

- 영농 편의성 제고 및
여성 농업인 복지향상
- 농업생산효율 및 편의 증대
- 행정절차 간소화로
임업경영 편의성 제고